

## ■ 화제의 뉴스 ■

**부도·법정관리·워크아웃 건설사, 시공능력평가 불이익 국토부 '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' 개정안 입법예고**

건설사업의 발주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절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에 발주자의 적정 건설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, 자본금, 건설공사의 안전·환경 및 품질 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(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).

그런데 건설업자가 부도·법정관리·워크아웃 과정에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시공능력에 큰 결함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건설업자 평가 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이 평가요소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시공능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.

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도가 났거나 법정관리와 기업개선작업(워크아웃)에 들어간 기업은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시공능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위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반영되는 것으로 4월 14일 입법예고되었고 6월 13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게 되었습니다.

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(-)가 된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%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. 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는 지금까지는 정상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. 특히 건설업체가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음수가 되고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실적평가액의 20%까지 차감합니다.

시공능력재평가 기준일도 일치시킵니다. 이전에는 워크아웃 발생기업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, 즉 '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때'를 재평가 기준일로 보았으나 법정관리의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, 즉 '기업회생절차 개시일'이 아닌 '기업회생절차 인가일'을 재평가 기준일로 보아 양자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법정관리의 경우에도 워크아웃과 같이 사유발생일인 '기업회생절차 개시일'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을 재평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.

이러한 법 개정예 따라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평가가 보다 적실성을 얻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

#### [관련 기사]

- [울산매일](#) - [부도](#) · [법정관리](#) · [워크아웃](#) 건설사, [시공능력평가 불이익](#) 국토부 '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' 개정안 입법예고(2016. 4. 14.)